DEDICA
—DEDICATED LAWYERS—

토지법(개정) 초안 – 제01호 초안
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

시행 예정일 2027.03.01 **(제01호 초안)**

근거: 농업환경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한 2026.07.20.자 제01호 토지법 초안을 토지법 제31/2024/QH15호(통합문서 제44/VBHN-VPQH호) 및 결의 제 254/2025/QH15호와 비교

www.dedica-law.com · david@dedica-law.com · 039 969 0012

DEDICA
—DEDICATED LAWYERS—

초안 개요

현행 · 신법 시행 시 효력 상실

토지법 제31/2024/QH15호

260개 조문 및 동 법을 개정·보완한 12개 법률 (제01호 초안 제98.2조)

결의 제254/2025/QH15호

토지법 시행상 장애 해소 결의, 폐지 (제01호 초안 제98.3조)

예외: 2024년 토지법 제16장의 경과규정 및 결의 254 제3조 제13항, 제4조 제9항·제10항은 계속 시행됩니다.

→

시행 예정일

01/03/2027

(초안 제98.1조)

제01호 초안

토지법(개정)

105개 조 · 13개 장

분석 대상: 2026.07.20.자 제01호 초안.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본 자료는 농업환경부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한 2026.07.20.자 제01호 초안을 분석한 것입니다. 정부는 2026.10.22. 제16대 국회 제2차 회기에 토지법(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제출안 및 국회 통과안은 일부 내용에서 제01호 초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DEDICA는 전문이 공개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본 자료는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2026.07.20.자 제01호 토지법 초안 제98.1조, 제98.2조, 제98.3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주요 변경 1 · 토지가격

토지가격: 개별 토지가격과 시장 원칙 폐지, 토지가격표와 조정계수로 산정 (경매의 경우 제외)

현행 · 결의 제254/2025/QH15호

시장 원칙에 따라 토지가격을 결정합니다. 토지가격 조정계수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토지가격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여전히 개별 토지가격을 결정합니다.

결의 제254/2025/QH15호 제6.1조, 제7.1조, 제8.2조 원문

토지가격 결정은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a) 토지가격 결정 방법은 시장 원칙에 따른다; [...]

[...] 토지가격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법 규정에 따라 개별 토지가격을 결정한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토지가격 조정계수의 공포를 결정한다; [...]

초안 · 제74조, 제75조

토지가격은 국가가 결정하며, 시장 원칙과 개별 토지가격은 더 이상 없습니다. 토지가격표와 토지가격 조정계수는 모두 성급 인민의회가 결정합니다.

초안 제74.1조, 제75.4조 원문

토지가격은 국가가 결정하며, 토지가격 결정은 다음 원칙을 보장해야 한다: ~~토지가격 결정 방법은 시장 원칙에 따른다;~~ [...] c) **토지, 세무, 공증, 은행, 부동산 데이터를 포함한 충분한 데이터에 근거해야 한다;** [...]

성급 인민위원회는 토지가격표, **토지가격 조정계수**를 작성하여 성급 인민의회에 제출하고, 성급 인민의회가 이를 결정, 수정, 보충한다.

비고

결의 254(2026.01.01. 시행)에 따라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는 토지가격표와 조정계수에 따라 산정됩니다(결의 254 제5조, 제7.5조). 초안은 이 메커니즘을 법률로 구체화하고, 개별 토지가격 규정을 폐지하며(현재 해안 매립 사업 및 토지가격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조정계수 공포 권한을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성급 인민의회로 이관합니다.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 산정 근거에는 징수율도 포함되나(초안 제71.1.h조), 초안은 아직 이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초안 제71.1조, 제74.1조, 제75.4조 · 2024년 토지법 제158조, 제160조 · 결의 제254/2025/QH15호 제5조, 제6.1조, 제7.1조, 제7.5조, 제8.2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주요 변경 2 · 토지임대 방식

토지임대 방식: 산업단지 인프라 사업과 관광 부동산 사업은 토지임대료 일시 납부 의무화

현행 · 결의 제254/2025/QH15호

토지사용자는 산업단지 인프라 사업, 관광 사업을 포함하여 토지임대료를 일시 납부 또는 연간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토지법 제30조 제3항 및 국가 관리 토지기금에서 임차하는 일부 경우 제외).

결의 제254/2025/QH15호 제4.2조 원문

토지사용자는 국가가 전체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 또는 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만, 토지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법 제30조 제3항: 무상으로 토지를 교부받은 공공사업단위가 연간 임대료 납부 방식의 토지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초안 · 제53조

토지임대 방식은 여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첨단기술단지 인프라 사업 및 관광 부동산 사업은 예외: 일시 납부가 의무이며 연간 납부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초안 제53.2조 원문

비농업 생산·사업용 토지를 사용하여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첨단기술단지 인프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비농업 생산·사업용 토지를 사용하여 관광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는 전체 임대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토지를 임대하며, 토지사용자는 토지임대 방식을 선택할 수 없고, 토지사용 방식을 [...] 국가가 연간 임대료를 징수하는 토지임대로 전환할 수 없다.

비고

이 두 그룹에 속하면서 현재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는 사업: 초안 제99.1조는 종전 법령에 따른 계속 이행을 허용하나, 제53.3.d조는 토지사용 방식의 전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초안 제53조, 제99.1조 · 2024년 토지법 제30조, 제120조 · 결의 제254/2025/QH15호 제4.2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주요 변경 3 ·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사업 토지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사업 토지: 12개월·24개월 기준 및 유상 연장 폐지

현행 · 2024년 토지법 제81조, 제105조

12개월 연속 토지 미사용 또는 24개월 진도 지연: 최대 24개월 연장 가능하며 추가 금액 납부; 연장 후에도 미사용 시 회수되며, 토지, 자산, 토지에 투입된 잔여 투자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제81.8조, 제105.1조). 불가항력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1.9조).

2024년 토지법 제81.8조 원문

국가가 투자사업 시행을 위하여 교부, 임대 [...] 한 토지가 현장에서 토지를 인도받은 날부터 12개월 연속 사용되지 않거나 토지사용 진도가 투자사업에 기재된 진도보다 24개월 지연된 경우; [...] 투자자는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연장을 받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토지사용료, 토지임대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연장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투자자가 토지를 사용에 투입하지 않은 경우 국가는 토지, 토지 정착 자산 및 토지에 투입된 잔여 투자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토지를 회수한다.

초안 · 제36조, 제44조, 제45조

토지를 사용에 투입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반하는 경우 토지를 회수합니다. 불가항력은 제외(제36.7조, 제36.8조). 법률에 기간 기준, 연장 및 추가 납부금이 더 이상 규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 없음(제44.8조); 토지에 투입된 잔여 투자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제45.2조).

초안 제36.7조 원문

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를 사용하면서 토지를 사용에 투입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반하는 경우.**

비고

초안 제36.7조에는 2024년 토지법 제81.8조와 같은 투자사업상 진도 대비 토지사용 진도 지연의 경우가 없으며, '토지를 사용에 투입하지 않음'의 기준도 정량화하지 않았습니다. 초안에는 토지 정착 자산 미보상에 관한 2024년 토지법 제105.1조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경과규정(제101.5조): 회수가 건의되었으나 회수 결정이 없는 경우 초안을 적용하고, 2024년 토지법 제81.8조에 따른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 계속 이행합니다. 투자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제37.1.d조).

법적 근거: 초안 제36.7조, 제36.8조, 제37.1.d조, 제44.8조, 제45.2조, 제101.5조 · 2024년 토지법 제81.8조, 제81.9조, 제105.1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주요 변경 4 · 토지사용권 수령 합의

토지사용권 수령 합의: 상업용 주택 사업은 주거용지만 합의 가능하다는 제한 폐지

현행 · 2024년 토지법 제127조, 결의 254

상업용 주택 사업은 주거용지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 있으며, 성급 인민위원회의 서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결의 254: 합의 기한 만료 시 토지 면적의 75% 초과 및 토지사용자 수의 75% 초과와 합의한 경우 성급 인민의회가 나머지 부분의 회수를 검토합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7.1.b조, 제127.3.c조 원문

1. [...] b) 상업용 주택 건설 투자사업 시행을 위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지 사용권 수령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 있다; [...]

3. 토지사용 조건 [...]은 다음을 포함한다: [...] c)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권 수령 합의에 관한 성급 인민위원회의 서면 승인이 있을 것.

초안 · 제17.2조, 제34.33조, 제58조

상업용 주택 사업에 대한 주거용지 합의 제한이 폐지됩니다. 제58조는 2024년 토지법 제127.3조와 같은 조건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17.2조(제1안)는 여전히 성급 인민위원회가 합의를 승인하도록 하며, 제2안은 이 내용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75% 초과 합의 시 나머지 부분을 회수하는 메커니즘이 법률에 반영됩니다.

초안 제34.33조 원문

토지사용권 수령 합의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합의 완료 기한 또는 연장된 합의 완료 기한이 만료되었고 토지 면적의 75% 초과 및 토지사용자 수의 75% 초과와 합의한 경우, 성급 인민의회는 투자자에게 토지를 교부·임대하기 위하여 나머지 토지 면적의 회수를 검토·승인한다 [...]

비고

초안은 상업용 주택으로 용도 전환 시 주거용지 또는 주거용지 및 기타 토지의 사용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2024년 토지법 제122.3.b조)을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머지 부분을 회수할 때 보상금이 합의 가격의 평균보다 낮으면 토지 보유자는 차액을 추가로 받으며, 투자자가 이를 선지급하고 투자비용에 산입합니다(초안 제42.4조, 결의 254 제3.7조 메커니즘 유지).

법적 근거: 초안 제17.2조(제1안), 제34.33조, 제42.4조, 제54조, 제58조 · 2024년 토지법 제122.3조, 제127조 · 결의 제254/2025/QH15호 제3.2.b조, 제3.7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주요 변경 5 · 토지 회수

토지 회수 사유 추가: 50ha 초과 물류센터, 국제조약; 도시구역 사업의 복합 기능 조건 폐지

현행 · 2024년 토지법 제79조, 결의 254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토지 회수 31개 경우; 도시구역 사업은 복합 기능과 인프라 동시 구비가 필요합니다. 결의 254는 자유무역구역, 국제금융센터, BT 계약 대금 지급용 토지기금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79.22조, 제79.27조 원문

22.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사업; 첨단기술단지; […] 경제구역 내 비관세구역 사업 시행;

27. 건설 법령에 따라 신축 또는 도시 개조·정비를 위하여 복합 기능을 갖추고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및 주택이 동시에 갖추어진 도시구역 건설 투자사업 시행; 농촌 주거지역 사업;

초안 · 제34조

50ha 초과 물류센터 및 국제조약 이행을 위한 회수 추가; 도시구역의 복합 기능·동시 구비 조건 폐지; 결의 254의 법제화.

초안 제34.22조, 제34.27조, 제34.30조 원문

22. 산업단지, 산업클러스터 사업; 첨단기술단지; […] 경제구역 내 비관세구역**; […] 해항, 공항, 내륙수로항을 지원하는 토지사용 규모 50ha 초과 물류센터 사업 시행.**

27. 건설 법령에 따라 신축 또는 도시 개조·정비를 위하여 ~~복합 기능을 갖추고 기술 인프라, 사회 인프라 및 주택이 동시에 갖추어진~~ 도시구역 건설 투자사업 시행; 농촌 주거지역 사업;

3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이행을 위한 토지 회수;**

.

비고

국가가 회수한 토지기금은 토지사용권 경매 또는 투자자 선정 입찰을 통해 교부·임대됩니다(제56조, 제57조). 다만 공공투자 자본 사용 사업, PPP 사업(제55.2조) 및 제55조의 기타 경우는 제외합니다. 토지 회수 대상인 도시구역 사업은 성급 인민의회가 결정하는 경우 입찰을 통해 토지를 교부받습니다(제57.1.a조).

법적 근거: 초안 제34조, 제55.2조, 제56조, 제57조 · 2024년 토지법 제79조 · 결의 제254/2025/QH15호 제3.2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주요 변경 6 · 토지사용 기간

토지사용 기간: 70년 기간을 '특별한 경우'로 변경, 투자법 기준 인용 삭제

현행 · 2024년 토지법 제172조

토지 교부·임대 기간은 투자사업의 운영기간 또는 신청서에 따르며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투자법상 운영기간이 50년을 초과하는 사업은 7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72.1.c조 원문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교부, 임대 기간은 투자사업의 운영기간 또는 토지 교부·임대 신청서에 따라 검토·결정하되,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투자법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이 50년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 교부·임대 기간은 사업기간에 따르되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초안 · 제79조

기간이 정해진 토지사용: 50년 이내, 특별한 경우 70년 이내. 제79.2.b조에는 '투자법상 운영기간이 50년을 초과하는 사업' 기준이 없으며, 제79.5조는 사업 조정 시 여전히 토지사용 기간을 운영기간과 연동합니다.

초안 제79.2.b조 원문 (2024년 토지법 제172.1.c조와 비교)

~~토지를 사용하는 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교부, 임대~~ **본 항 a호에 규정된 토지사용** 기간은 ~~투자사업의 운영기간 또는 토지 교부·임대 신청서에 따라 검토·결정하되,~~ 5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투자법 규정에 따라 운영기간이 50년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 교부·임대 기간은 사업기간에 따르되~~ 7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간 만료 시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국가는 ~~토지사용~~ 연장을 검토하며, ~~다만~~; **연장기간은** 본 ~~항~~**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비고
초안은 '특별한 경우'를 정의하지 않습니다(제3조, 제79조). 초안은 연장 신청서 제출 기한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으며, 연장되지 않은 토지는 회수됩니다(초안 제37.1.c조). 초안 제79.5조는 사업을 양수한 투자자 또는 해산·파산한 투자자를 대체하는 투자자에 대한 토지사용 기간 조정을 법률에 반영합니다(결의 254 제4.7조).

법적 근거: 초안 제3조, 제37.1.c조, 제79조 · 2024년 토지법 제172조 · 결의 제254/2025/QH15호 제4.7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주요 변경 7 · 경매 없는 토지 교부·임대

경매·입찰 없는 토지 교부·임대: 투자자 승인 사업의 경우 폐지, 성급 인민위원회가 추가 경우 결정 가능

현행 · 2024년 토지법 제124조, 결의 254

결의 254 추가 사항: 국가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가 승인된 토지 회수 대상 사업;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에너지·관광 사업. 기타 경우는 총리가 결정합니다.

결의 제254/2025/QH15호 제4.4조 원문

토지사용권 경매 없이, 토지를 사용하는 사업 시행 투자자 선정 입찰 없이 토지를 교부, 임대하는 일부 경우를 다음과 같이 보충한다: [...] b) 국가가 토지를 회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 국가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법령에 따라 투자 방침 승인 및 투자자 승인 또는 투자자 선정 결정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교부, 임대; c) 경제·사회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의 상업·서비스와 연계된 에너지 사업, 관광 사업.

초안 · 제55조

국가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가 승인된 사업의 경우가 더 이상 없습니다. 에너지·관광 사업은 전체 면적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속해야 하나, 관광 사업은 더 이상 상업·서비스와 연계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 사업에서 회수한 토지기금의 경우를 추가합니다. 기타 경우는 정부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초안 제55.3조, 제55.8조 원문

h) **사업 면적 전체가** 경제·사회 여건이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의 상업·서비스와 연계된~~ 에너지 사업, 관광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교부·임대**; [...]

k) ~~총리가 결정하는~~**정부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경우.

8. **토지사용권 수령 합의 사업에 대하여 회수한 토지기금.**

비고

초안 제55조에는 결의 254 제4.4.b조(국가 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투자자가 승인된 사업)에 상응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초안은 관심 표명 요청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1인뿐인 경우(제55.6조)와 투자자가 이미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경우(제58.4조)를 유지합니다. 결의 254 제4조에 관하여 초안은 제9항, 제10항의 경과규정(제98.3조)만 유지하며, 이 경우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초안 제55조, 제58.4조, 제98.3조 · 2024년 토지법 제124조 · 결의 제254/2025/QH15호 제4.4조

DEDICA
—DEDICATED LAWYERS—

주요 변경 8 · 토지 용도 전환

토지 용도 전환: 허가 대상 07개 그룹에서 05개 그룹으로 축소; 허가 불요 시에도 사급(社級) 토지사용계획에 부합해야 함

현행 · 2024년 토지법 제121조

07개 그룹은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공공사업 시설용지, 영리 목적의 공공용지를 생산·사업용지로 전환하는 경우와 생산·사업용지를 상업·서비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기타 경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21.1.e조, 제121.1.g조, 제121.3조 원문

e) 공공사업 시설 건설용지, 영리 목적이 있는 공공 목적 사용 토지를 비농업 생산·사업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g) 상업·서비스용지가 아닌 비농업 생산·사업용지를 상업·서비스용지로 전환하는 경우.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용도 전환은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초안 · 제54조

허가 대상 05개 그룹: 2024년 토지법 제121조 e호, g호 삭제. 집중 축산 그룹은 수산 용지로 확대되며 대규모 사업 제한이 없어집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사급 토지사용계획에 부합해야 합니다.

초안 제54.1.c조, 제54.3조 원문 (2024년 토지법 제121조와 비교)

c) 기타 토지를 집중 축산**·수산** 용지로 전환하는 경우~~(대규모 집중 축산 사업 사항 시)~~;

3.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용도 전환은 관할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사급 토지사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비고

2024년 토지법 제121조 제1항 e호, g호의 두 경우는 더 이상 허가 대상 목록에 없으므로 초안 제54조 제3항(허가 불요, 단 사급 토지사용계획에 부합해야 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1항의 다른 경우, 예컨대 토지사용료 없이 교부된 토지(d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유의: 초안 제72.1조는 여전히 '제54조 제1항 b, c, d, đ, e 및 g호'를 인용하나, 제54.1조에는 a호부터 đ호까지만 있습니다.

법적 근거: 초안 제54조, 제72.1조 · 2024년 토지법 제121조

DEDICA
—DEDICATED LAWYERS—

기업이 유의해야 할 경과규정

기존 권리·의무는 토지사용 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

토지사용자는 이 법 시행일 전의 법령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초안 제99.1조)

현재 토지 임차인은 신법에 따라 임대 방식 재선택 가능

이 법 시행일 전에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임대 방식을 선택하고 토지사용 방식을 전환할 수 있다.

(초안 제102.1조)

결의 254에 따른 토지가격표·계수 계속 적용

결의 제254/2025/QH15호의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의회가 공포한 토지가격표와 성급 인민위원회가 공포한 토지가격 조정계수는 관할 기관·권한자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가격표, 토지가격 조정계수의 작성, 수정, 보충을 결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초안 제103.1조)

보상 방안 미승인 시 신법 적용

이 법 시행일 전에 보상, 지원, 재정착 방안 승인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을 시행한다.

(초안 제101.1조)

2024년 토지법 제81.8조에 따른 연장 결정이 있으면 계속 이행

이 법 시행일 전에 토지사용 연장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 결정에 따라 계속 이행한다. 토지사용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초안 제101.5조, 위반으로 인한 토지 회수 규정)

법적 근거: 2026.07.20.자 제01호 토지법 초안 제99.1조, 제101.1조, 제101.5조, 제102.1조, 제103.1조 (국회 통과 시 변경될 수 있음)

DEDICA
—DEDICATED LAWYERS—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와 법률 전문가 팀이 항상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락하시면 심층적인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 | 상시 법률 자문 | 분쟁 해결
형사/범죄 | 인수합병(M&A) |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찌민시 쑤언호아 동 하이바쯩 거리 171번지
A&T 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law.com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자문을 받으세요.